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9

2024년 8월 3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8월 12일, 김동욱 의원(찬성자:4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프 연습 등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나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또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시설 이용자 및 관라자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나 다른 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동으로 이용자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행위제한 규정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의 조치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8조 ~ 제10조</u> (생략)</p>	<p><u>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u> <u>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p><u>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u></p> <p><u>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u></p> <p><u>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p> <p><u>제9조 ~ 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

- 먼저, 제한행위 신설을 규정한 안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제17조의31)은
 - ①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②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 ③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④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2)에서
 - ① 흡연·음주 행위,
 - ②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③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 ④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 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 1)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2)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⑥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⑦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는 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바, 법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됨.
- 참고로, 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 20개 자치구에서는 “흡연·음주·가무·방뇨”, “애완동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의 훼손”,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등의 행위를 각 자치구별 특성에 맞게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붙임] 참조),
-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 자치구 조례에서 제한한 행위에 추가적으로 동 개정안의 제한행위가 공통 적용되어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조치를 규정한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 법 제31조제2항제3호³⁾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안 제8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조치권한을 새롭게 부여하고 있는데,
- 상기와 같이 법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만 제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명령과 조치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 개정안과 같이 시장으로 하여금 제한행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3)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4.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 3.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③ 제23조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소지가 있어 보이며,

- 그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서울시와 자치구 간 중복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안 제8조제2항)을 새로이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관계 상위법령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부여한 조치권한에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해 보임.

[표]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u>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영 제11조의3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p><u>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u></p> <p><u>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행위</u></p> <p><u>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u></p>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p> <p>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는 행위</p>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관리 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 이미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조치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권한으로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안 제 8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99
----------	------------

제안일자 : 2024년 8월 30일

제안자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8조제2항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관리감독기관의 장인 자치구청장에게 이미 제한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력한 조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 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의 조치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법이 정한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권한으로 일임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과 현실성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주요골자

- 가.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한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시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 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험을 주는 행위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u><신 설></u>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 서의 행위제한) ①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p> <p>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 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p> <p>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 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 는 행위</p> <p>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 설에서 제한된 행위를 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 에게 위해·위험을 가한 사람에게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고 즉시 안전조치 를 할 수 있다.</p>	<p>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 서의 행위제한) 영 제11 조의3제7호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행위”란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말한다.</p> <p>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 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p> <p>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 심을 일으켜 피해를 주 는 행위</p>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619 365 790 405"><신 설></p> <p data-bbox="172 1099 614 1142"><u>제8조 ~ 제10조</u> (생 략)</p>	<p data-bbox="818 365 1436 607"><u>제8조(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53 633 1436 875">1. <u>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u> <li data-bbox="853 902 1436 1077">2. <u>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u> <p data-bbox="818 1104 1436 1211"><u>제9조 ~ 제11조</u>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p>